

医療保險문답



문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신장이식을 요할시 환자의 신장 적출후 신장에 염증성질환 및 합병증 등으로 신적출 당일날 동시에 신이식을 못할 상태의 환자로 (새신장 감염우려 등) 일정한 시일후에 신이식을 할 때 수가산정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 염증성질환으로 환자의 신장을 먼저 양측 적출후 동시에 이식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인공신장 투석을 일정한 기간동안 해오다가 신이식을 시행하였을 경우(본원 적출후 14일후 이식) 신적출술 수기료양측(자-327 가 X 2)과 신이식술(자-328)을 산정할 수 있는지요? 또 신적출후 동시에 신이식을 시행시에 수가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?

답 신장이식 수술시 신제공자에 대한 신적출술은 「자-327-나」의 소정 수술료를 산정하며, 신이식을 받는 환자에게는 「자-328」의 소정 수술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「자-328」의 소정금액에는 환자의 신적출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자에게 신적출술과 신이식술을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더라도 환자의 신적출술 비용으로 「자-327」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.

문 경부임파절에 전이된 갑상선암의 영구수술로 근치적 경부청소술 및 갑상선전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부청소술

(자-211)과 갑상선전 절제술(자-455-가)의 수술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.

답 갑상선암에 갑상선수술과 경부청소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경부청소술(자-211)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하도록 급여1492-6736호('84. 5. 16)로 진료비 심사지침(제5차분)을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.

문 간경변시에 시행하는 High retention enema는 K-M, Normal Saline 또는 Oupalac, Normal Saline로 enema 하는 처치의 비용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.

답 수기료는 S-S enema (자-7-나)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합니다. 약제료는 K-M, 듀파락은 약가기준액표에 의거 실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생리식염수는 진료수가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(10)에 의거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.

문 두개골 성형술시, 임파관종 제거시, 대퇴부에 7×8×5cm의 큰 지방종을 제거시 해모박의 산정여부를 알고 싶습니다.

답 Hemovac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급여1492-35710호('83. 4. 1)호로 시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두개골 성형술은 신경외과 분야의 개두술에

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. 임파관중 제거시와 대퇴부위의 지방종의 크기가 7×8×5cm 이상인 것을 적출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문 코에 Defect가 있어 호흡곤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복부에서 코로 원거리 피판술을 입원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할 경우와 입원기관이 다를 경우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.

답 동일 입원기간에 입원기관이 상이할 지라도 원거리 피판술(자-16-나)의 소정금액을 1회만 산정하여야만 합니다.

문 P.T.C.A(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)의 수기료는 혈관성형술(자-163)의 30%를 산정토록 하였는바 시술의 난이도 및 위험도가 높아 이 수가는 불합리하므로 관상동맥협착증수술(자-183)의 50%를 산정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답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급여 1492-29412호('84. 10. 26)에 의하기 바람이며 이 수가에 대하여는 차기 수가 조정시 관련학회 등과 검토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.

문 삼출성중이염 환자에게 사용하는 Ventilation tube는 지속적 배액용 튜브 인바 별도 산정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.

답 중이염 환자의 중이내튜브 유치술시 삼출액의 배액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Ventilation tube는 종전에는 의료보험에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Polyethylene tube를 사용하여 왔습니다. 따라서 고가인 Silicon tube나 Telfon tube를 사용한다 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.

문 만성중이염 환자 특히 중이진주종이 있어 이소골 연쇄의 파괴가 심한 환자의 청각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인조이소골(PORP, TORP)은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가인 재료이므로 진료수가 기준 제9장

산정지침(10)-7항에 해당되는 재료로 별도 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

답 TOPR(Total Ossicular Replacement Prosthesis) 및 PORP는 만성중이염 환자로서 고막과 이소골이 파괴된 경우 고막성형술 시행한후 음이 내이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이소골 대신에 사용하는 재료이므로 진료수가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등 산정지침(10)-7에 의거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.*